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 · 공포 및 시행

01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

도시가스사업법 개정(2004.12.31)에 따른 하위법령의 정비와 가스시설 시공기술의 발전 추세 등에 따라 그간 운영해온 일부 안전관리규정의 관련조문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법령 개정절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 3월 31일 개정 · 공포하고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수행하는 도시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시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을 정하므로써 제도권에 흡수했다.

이를 통해 대행자의 지위향상과 무분별한 난립제어 등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본연의 업무인 안전관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1,000여만 도시가스 사용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효율화하게 되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가스시설 시공기술의 발전추세 등 여건변화를 감안해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의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동 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였다.

향후 정부는 사업자 등의 법령 개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감과 동시에 다각적인 시책 등의 전개를 통해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가스사업법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시공기록등의 보존방법등)”을“(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방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사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설치·시공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및 공사가 완공된 도면”을 “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및 완공도면”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기록중 완공도면은 5년간 이를 보존하되”를 “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도면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파괴검사 필름을 5년간 보존하고”로 한다.

제21조의 제목중 “대상등”을 “대상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중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것으로서 호칭지름(이하 “관경”이라 한다)”을 “호칭지름”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중 “관경”을 “호칭지름”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가목중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것으로서 관경”을 “호칭지름”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관경”을 “호칭지름”으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자격) 법 제28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는 각각 갖추어야 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별표 14 제4호다목(1)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가 1인 이상일 것
2. 사용시설점검원(별표 14 제4호나목(2) 또는 동호다목(2)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이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3천 가구 또는 사업체(공동주택등인 경우에는 4천 가구 또는 사업체) 마다 1인 이상일 것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에 등록된 자일 것

제58조의2의 제목중 “안전조치등”을 “안전조치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관경”을 “호칭지름”으로 한다.

제62조의6중 “제64조제2항”을 “제64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8) 및 제2호가목(4)중 “관경”을 각각 “호칭지름”으로 하고, 동표 제3호나목 본문중 “다음의 1”을 “다음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목 단서중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를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m 미만으로”로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1)중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관경”을 “호칭지름”

도시가스사업법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으로 하고, 동목(2)중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m 미만으로 증감하여 변경하는 공사”를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m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로 하며, 동호나목(1)중 “관경”을 “호칭지름”으로 하고, 동목(2)중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증설하는 공사”를 “10분의 1 이내 또는 50m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로 하며, 동표 제4호가목중 “신규설치공사”를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 한다.

별표 5 제3호차목중 “KS C 9609(피뢰침)”를 “KS C IEC 61024(건축물 등의 뇌보호시스템)”로 한다.

별표 6 제8호가목(9)(가) 후단중 “관경”을 “호칭지름”으로, “매설배관”을 “배관”으로 하고, 동목(13)(나) 본문 및 (14)(나) 전단중 “관경”을 각각 “호칭지름”으로 하며, 동목(14)(다)중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30cm 이상의”를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cm 이상의”로 하고, 동호나목(5) 및 동표 제10호중 “관경”을 각각 “호칭지름”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라목(3)중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30cm 이상의”를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cm 이상의”로 하고, 동호바목(1) 및 동호사목(1)중 “관경”을 각각 “호칭지름”으로 하며, 동표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제4호가목(1) 단서중 “호스콥 또는 배관용밸브”를 “배관용밸브”로 한다.

다. 가스누출경보기 연동차단기능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별표 8 제2호나목(8)중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관경”을 “호칭지름”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책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일반도시가스사업자중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에 한한다)

별표 11 제2호자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수요자관리	(1)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안전홍보에 관한 사항 (3) 액화석유가스에서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한 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철거 및 막음조치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4)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책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일반도시가스사업자중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에 한한다)
----------	---

별표 14 제4호가목(2)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로 한다.

도시가스사업법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별표 17의2 제목중 “(제64조제2항제2호관련)”을 “(제64조제3항제2호관련)”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기재상 주의사항란 제4호중 “환경”을 “호칭지름”으로 한다.
- 별지 제3호서식 앞쪽중 “⑩배관의 환경 및 압력”을 “⑩배관의 호칭지름 및 압력”으로 한다.
- 별지 제39호서식 제12호 및 별지 39호의2서식 제4호중 “환경”을 각각 “호칭지름”으로 한다.
- 제1조중 “도시가스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 제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도시가스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각각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 제13조제4호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 제20조의2제1항제1호 단서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으로 한다.
- 제21조제5항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한다.
- 제23조제1항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 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 제25조제6항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 제27조의2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도시가스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한다.
- 제53조 각호외의 부분중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 제56조중 “도로법시행령”을 “「도로법 시행령」”으로 한다.
- 제62조의2제4항제5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 제62조의3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 제64조제2항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 제65조의2 전단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p> <p>제20조(시공기록등의 보존방법등) ① 시공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공사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설치·시공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및 공사가 완공된 도면(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기록중 완공도면은 5년간 이를 보존하되,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완공도면 사본(전산보조기 저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제21조(시공감리 및 완성검사의 대상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호의 공사로 한다.</p> <p>1. ~ 3. (생략)</p> <p>4. 별표 3의 공사계획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급관[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것으로서 호칭지름(이하 “관경”이라 한다)이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과 그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 및 50미터미만인 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p> <p>5. (생략)</p> <p>②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의 대</p>	<p>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p> <p>제2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방법 등) ① _____ 시공기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및 완공도면 _____</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도면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파괴검사 필름을 5년간 보존하고 _____</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21조(시공감리 및 완성검사의 대상등) ① _____</p> <p>1. ~ 3. (현행과 같음)</p> <p>4. _____ 호칭지름 _____</p> <p>5. (현행과 같음)</p> <p>② _____</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상이 되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2. (생략)</p> <p>3.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관경 50밀리미터이상인 배관을 20미터이상 증설 · 교체 또는 이설하는 변경공사</p> <p>4. 5. (생략)</p> <p>③ ~ ⑤ (생략)</p> <p>제25조(정기검사) ① · ② (생략)</p> <p>③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 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본관 · 공급관 또는 정압기의 정기검사일은 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의 대상이 아닌 가스공급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은 당해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 가.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것으로서 관경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p> <p>나. 배관의 길이가 50미터미만인 사용자공급관(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관경 50밀리미터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다)</p> <p>3. (생략)</p> <p>④ ~ ⑦ (생략)</p> <p>〈신 설〉</p>	<p>_____</p> <p>1. 2. (현행과 같음)</p> <p>3. _____ 호칭지름</p> <p>_____</p> <p>4. 5.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25조(정기검사)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_____</p> <p>_____</p> <p>_____</p> <p>1. (현행과 같음)</p> <p>2. _____</p> <p>_____ 각목의 어느 하나</p> <p>_____</p> <p>가. 호칭지름 _____</p> <p>_____</p> <p>나. _____</p> <p>_____ 호칭지름</p> <p>_____</p> <p>3. (현행과 같음)</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p>제47조(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자격) 법 제28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p>

0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8조의2(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등) ① (생략)</p> <p>② 법 제30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생략)</p> <p>2. 가스배관의 압력·관경 및 재질</p> <p>3. 4. (생략)</p> <p>제62조의6(준용규정) 제21조제1항·제5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5조 내지 제57조, 제58조의2, 제63조제2항 및 제64조제2항의 규정은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지지는 각각 갖추어야 한다.</p> <p>1. 안전관리책임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별표 14 제4호다목(1)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가 1인 이상일 것</p> <p>2. 사용시설점검원(별표 14 제4호나목(2) 또는 동호다목(2)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이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3천 가구 또는 사업체(공동주택등인 경우에는 4천 가구 또는 사업체)마다 1인 이상일 것</p> <p>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에 등록한 자일 것</p> <p>제58조의2(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p> <p>_____</p> <p>1. (현행과 같음)</p> <p>2. _____호칭지름 _____</p> <p>3. 4. (현행과 같음)</p> <p>제62조의6(준용조항)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 제64조제3항 _____</p> <p>_____</p>

04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중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는 안전관리규정을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